

특집

2006 지방재정 운영방향



- 2006 지방예산개요와 운용방향 12

/정경진

- 200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26

/송영철

- 2006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 43

/정종제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방향 54

/서덕모

- 2006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향 65

/김진영



2006 지방예산개요와 운용방향

정 경 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1. 머리말

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혁신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정비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기본틀에 따라 참여정부 3년여 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분야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재정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¹⁾(’00년 15% → ’05년 19.13% → ’06년 19.24%)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함은 물론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사업²⁾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 (’05년 신설)로 교부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제도도 일대 혁신을 기하였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전면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하는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새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 ’06년 지방교부세법정율 인상은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포함)의 법정율은 ’05년과 동일하나,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분권교부세율을 0.11%p 상향조정(’05년 내국세의 0.83% → ’06년 0.94%)한데 따른 것임이 대폭 확대되었다.

2) ’05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총 533개)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149개 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로 9,581억원을 교부하였다.

지방재정관리제도 혁신의 의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의 양적인 팽창에 걸맞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정비가 미흡한 현실을 보완한 것이다. 국가와 달리 예산, 기금, 계약, 공유재산 등 복잡 다양한 지방재정 각분야가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이라는 단일법에 백화점식으로 모여 운영된 것을 분야별 특성과 수요자 위주의 4개의 법체제³⁾로 혁신한 것이다 (별첨 1 참조).

둘째, 중앙부처의 권한을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재정분권 로드맵상의 혁신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폐지, 지방채발행 개별승인 제도에서 총액한도내는 자치단체 자율발행으로 개선, 중앙의무조달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조달의 자율성 확대 등이 그것이다.

셋째,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민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공사시공과정의 주민참여 감독제, 지역주민이 자გი지역의 재정운용결과를 알 수 있는 재정공시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자치단체 업무도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는 복식부기제도 도입근거도 마련하였다.

II. 2006년 지방예산제도 운용방향

2006년은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주년을 맞이함은 물론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새롭게 개막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그간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3년여 동안 마련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분권형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마련된 혁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정부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마련된 각종 재정혁신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기도 한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4개 법제 · 개정중 전부개정은 지방재정법이며, 나머지 3개의 법은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지방기금분야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계약분야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 · 물품분야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다.

● < 별첨 1 : 지방재정법체계 혁신 요약 > ●

지방재정관련법		입법 사유 및 주요내용
현 행 (1개)	개 선 (4개)	
기 금 제10장§110 ※자치법§13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기금의 체계적 ·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 ※ 지금까지 자치단체조례로 설치가능 (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미흡) ※ 국가도 '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예 산 제3장§29~§48 회계 · 지출 제6장§49~§58 채 권 제9장§69~§71 제10장§105~§108	지방재정법	－ 현행법중 제정되는 기금, 계약, 공유 재산 및 물품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기 마련된 재정혁신 방안을 반영 • 지방채총액한도제 도입 근거 마련 • 복식부기회계제도 근거 마련 • 재정분석 · 진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부여 규정 마련 • 재정운영 공시제도 근거 마련 등
계 약 제7장 §59~§63 ※국가계약법 준용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 주민편의에 입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계약관련 기본사항을 규정 •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 도입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도입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 규정 등
재 산 제10장 §72~§89 물품관리 제10장 §72~§104③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 경영수익개념 도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 • 공유재산 교환요건의 완화 • 행정자치부의 특별재무조사 폐지 •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 사전 승인제 폐지 등

1.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에 맞는 재정운용원칙 정립

지방재정은 규모측면에서 볼 때, 매년 확대되어 금년에는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101조 3,522억원에 이르러 지방재정 100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규모의 증가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의 행사성 축제 남발, 재정여건에 맞지 않는 호화 청사건립 등을 들어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 재정여건 측면에서도 세입증가보다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사업 등 재정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큼 지방재정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도 이전보다는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지방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 지방재정의 새로운 역할 등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전문가집단과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상반기중에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원칙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2. 재정운용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재정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표준조례안을 작성·보급하여,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동제도가 활성화되면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이전단계부터 자율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편성된 사업중 마을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 마을이장 등 주민대표 등이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지역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관련 비리근절은 물론 시공품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사용이 원천 차단되는 Clean card를 자치단체 업무용 신용카드에 도입하고, 법정경비의 기준경비의 표준단가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 예산집행매뉴얼도 개발·보급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재정운용 성과분석의 실효성 강화 및 재정정보공개 확대

지난해 시범실시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예산결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소요기간은 단축하되, 분석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여 지방재정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당 자치단체 재정운용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도 지난해 22개단체(광역시 16개, 기초 6개) 시범실시에서 올 해부터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된다.

재정운영결과를 재정운영총괄, 재정분석결과, 감사결과, 주민관심사항 등 공통공시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특수공시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방재정공시제도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06. 8월까지 재정공시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자가지역 살림살이가 잘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재정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성과관리형 기반 마련

그 동안 지방재정 분야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연계가 곤란하고 정보공유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연계·통합하기 위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이 1단계 BPR/ISP 수립을 완료('04. 9)하고 올 해는 핵심분야인 재정계획, 예산관리, 지출·자금을 포괄하는 2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동시스템을 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할 계획으로, 재정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함은 물론 국가 통합재정통계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재정의 성과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들도 본격 도입된다.

첫째,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에 중점을 둔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지향적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자자치단체의 '07년 예산을 사업별예산으로 시범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07년)에 대비하여 전자자치단체의 자산·부채실사작업을 추진하고, 실무자교육 등 기반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방기금도 기금별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Ⅲ. 2006년 지방예산개요와 특징

1. 2006 지방예산 총규모

2006년도 국가와 지방의 당초예산 총규모(순계)는 각급 정부별로 보면, 국가가 175조 3,88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01조 3,522억원,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이 31조 1,484억원으로 단순합계는 총 307조 8,888억원이나, 정부간 이전재원을 공제하여 총재정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111조 1,272억원(46.1%), 지방자치단체가 97조 6,066억원(40.5%),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이 32조 4,699억원(13.4%)으로 구성되어,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 비율은 46:54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표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재정규모(순계기준) 비교 ●

(단위: 억원)

구분	국가	자치단체	지방교육
예산서상 규모 3,078,888억원	1,753,882억원(57.0%) ┐ 일반회계 1,239,294 └ 특별회계 514,588	1,013,522억원(32.9%) ┐ 일반회계 786,877 └ 특별회계 226,645	311,484억원(10.1%)
①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395,048억원 ┐ 지방교부세 213,665 └ 국고보조금 181,383	(373,557억원)⊕21,491 ┐ 지방교부세 193,177 └ 국고보조금 180,380	—
② 국가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247,562 ┐ 교육교부금 245,966 └ 교육보조금 1,596	—	(234,455억원)⊕13,107 ┐ 교육교부금 232,859 └ 교육보조금 1,596
③ 지방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58,947억원 ┐ 보조금 2,545 └ 전출금 56,402	(58,839억원)⊕108 ┐ 법정부담금 58,215 └ 비법정부담금 624
재정사용액 2,412,037억원	1,111,272억원(46.1%)	976,066억원(40.5%)	324,699억원(13.4%)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총규모로 보아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조 9,849억원 (9.7%)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0조 6,733억원 (59.9%),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재원이 37조 3,557억원(36.9%), 기타 지방채 등이 3조 3,232억원(3.2%)으로 각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 <표 2>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

(단위: 억원)

구분	2006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계	1,013,522	100	923,673	100	89,849	9.7
자체재원	606,733	59.9	570,721	61.8	36,012	6.3
지방세	352,751	34.8	336,952	36.5	15,799	4.7
세외수입	253,982	25.1	233,769	25.3	20,213	8.6
의존재원	373,557	36.9	324,860	35.2	48,697	15.0
지방 교부세	193,177	19.1	172,047	18.6	21,130	12.3
보조금	180,380	17.8	152,813	16.5	27,567	18.0
지방채	33,232	3.2	28,092	3.0	5,140	18.3

한편,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8조 6,877억원으로 2005년 대비 9.7%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조 6,645억원으로 2005년 대비 9.9%가 증가하였다 (<표 3> 참조).

● <표 3> 회계별 예산규모 ●

(단위: 억원)

구분	2006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013,522	100	923,673	100	89,849	9.7
일반회계	786,877	77.6	717,504	77.6	69,373	9.7
특별회계	226,645	22.4	206,169	22.4	20,476	9.9

예산규모의 증감추세를 보면, 올해의 예산증가율은 10%대를 유지하였던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의 9.7%이다 (〈표 4〉 참조).

● 〈표 4〉 연도별 예산규모 신장추세 ●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규모	644,892	713,933	781,425	872,840	923,673	1,013,522
전년대비증가액	89,804	69,041	67,492	91,415	50,833	89,849
증가율(%)	16.2	10.7	9.5	11.7	5.8	9.7

※ 당초예산기준

2.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단체가 60.1%인 60조 8,962억원, 시가 24.5%인 24조 8,725억원, 군이 10.8%인 10조 9,039억원, 자치구가 4.6%인 4조 6,796억원으로 구성되어,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성비율이 60:40으로 나타났다. 예산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가 8.6%, 기초자치단체가 8.0%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지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지역이 15.9%인 16조 797억원, 6개 광역시 지역이 19.6%인 19조 8,367억원, 도 지역이 64.5%인 65조 4,35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도와 대동소이한 분포이다 (〈표 5 참조〉).

● 〈표 5〉 자치단체별 예산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2006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지역별	• 서울	160,797	15.9	158,534	17.2	2,263	1.4
	• 광역시	198,367	19.6	184,463	20.0	13,904	7.5
	• 도	654,358	64.5	580,676	62.8	73,682	12.7
계		1,013,522	100	923,673	100	89,849	9.7

단체별	• 시도본청	608,962	60.1	560,978	60.7	47,984	8.6
	• 시	248,725	24.5	215,985	23.4	32,740	15.1
	• 군	109,039	10.8	99,787	10.8	9,252	9.3
	• 자치구	46,796	4.6	46,923	5.1	△127	△0.3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전체규모의 19.6%인 19조 8,8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16조 797억원, 경남이 8조 1,773억원, 경북이 7조 5,128억원, 전남이 7조 3,827억원의 순이며, 울산이 1조 6,460억원(1.6%)으로 재정규모가 제일 작았다

시·도별 예산규모 증가율은 경기도가 16.0%가 증가하여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북과 경북은 같은 증가율을 보이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6〉 참조).

● 〈표 6〉 시·도별 예산규모 ●

(단위: 억원, %)

	회계별			단체별		2005당초 (B)	증감율 (A/B)
	계(A)	일반	특별	시·도	시·군·구		
합계	1,013,522	786,877	226,645	608,962	404,560	923,673	9.7
서울	160,797	125,140	35,657	132,784	28,012	158,534	1.4
광역시	198,366	141,250	57,119	172,711	25,657	184,463	7.5
부산	55,831	38,803	17,029	48,750	7,082	51,415	8.6
대구	35,632	26,832	8,801	30,948	4,684	34,417	3.5
인천	46,691	31,379	15,313	40,249	6,443	42,518	9.8
광주	21,796	15,624	6,172	20,052	1,744	20,364	7.0
대전	21,956	15,084	6,872	19,585	2,371	19,949	10.1
울산	16,460	13,528	2,932	13,127	3,333	15,800	4.2
도	654,358	520,490	133,870	303,468	350,890	580,676	12.7
경기	198,880	142,825	56,055	91,244	107,636	171,388	16.0
강원	51,250	45,047	6,203	23,102	28,148	48,587	5.5
충북	38,346	31,904	6,442	19,123	19,223	35,119	9.2

충남	61,708	47,141	14,568	26,800	34,909	55,320	11.5
전북	53,685	45,200	8,485	25,235	28,450	47,149	13.9
전남	73,827	60,959	12,868	36,341	37,486	65,995	11.9
경북	75,128	64,163	10,965	32,360	42,768	65,943	13.9
경남	81,773	67,843	13,930	38,760	43,012	72,935	12.1
제주	19,761	15,408	4,354	10,503	9,258	18,240	8.3

3. 2006 지방예산의 분석

가. 세입구조

2006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의 세입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의 34.8%인 35조 2,75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25.1%인 25조 3,982억원, 지방채가 3.3%인 3조 3,232억원으로 자체재원이 총 63.2%인 63조 9,965억원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9.1%인 19조 3,177억원, 국고보조금이 17.8%인 18조 380억원으로 의존재원은 총 36.9%인 37조 3,55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원별 증감내역을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방세 4.7%, 세외수입 8.6%, 지방교부세가 12.3%, 국고보조금이 18.0%, 지방채가 18.3% 각각 증가하였다 (〈표 7〉 참조).

● 〈표 7〉 세입원별 증가내역 ●

(단위: 억원)

구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2006(A)	1,013,522	352,751	253,982	193,177	180,380	33,232
구성비(%)	100	34.8	25.1	19.1	17.8	3.3
2005(B)	923,673	336,952	233,769	172,047	152,813	28,092
구성비(%)	100	36.5	25.3	18.6	16.5	3.0
A/B(%)	9.7	4.7	8.6	12.3	18.0	18.3

2006년도 지방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은 총 18조 380억원으로 2005년 15조 2,813억원보다 2조 7,567억원 증가되어 18.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조 3,177억원으로 2005년 17조 2,047억원보다 2조 1,130억원 증가되어 8.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존재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된 규모와 국가의 배정 확정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지원예산의 확정 내시가 지방예산 편성시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부처에서는 회계연도 하반기까지도 국고보조금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4.4%로 2005년도(당초예산 기준)의 56.2%보다 1.8% 낮아졌다. 이는 자체재원의 증가율(6.8%)이 의존재원의 증가율(15.0%)보다 8.2% 낮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여건에 따라 광역·기초간, 도시·농촌간 상당한 격차를 나타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93.3%, 광역시 66.7%, 도 36.1%, 시 39.4%, 군 16.1%, 자치구 40.5%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 〈표 8〉 2006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단위: %)

구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54.4	93.3	66.7	36.1	39.4	16.1	40.5
최 고 (단체명)	—	93.3 (서울본청)	71.0 (대전본청)	68.8 (경기도본청)	72.4 (경기 성남)	50.5 (울산 울주)	90.4 (서울 서초)
최 저 (단체명)	—	—	54.1 (광주본청)	13.6 (전남본청)	11.3 (전북남원)	7.8 (전남 강진)	15.6 (대전 동구)

주 : 전국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계규모를 사용하고, 개별단체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총계예산규모를 사용

나. 세출구조

2006년도 지방예산규모(순계)를 세출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3.0%인 23조 3,131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3.6%인 13조 8,124억원이고, 사업예산은 58.3%인 59조 1,292억원, 채무상환이 3.6%인 3조 6,384억원, 예비비 등이 15.1%인 15조 2,715억원이다. 이를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총예산규모는 9.7%가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8.9%, 사업예산이 10.5%, 예비비 등은 8.1%가 각각 증가하였다(〈표 9〉 참조).

● 〈표 9〉 세출성질별 구성 ●

(단위: 억원, %)

구 분	2006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013,522	100	923,673	100	89,849	9.7
경상예산	233,131	23.0	214,131	23.2	19,000	8.9
-인건비	138,124	13.6	129,316	14.0	8,808	6.8
-경상적경비	95,007	9.4	84,815	9.2	10,192	12.0
사업예산	591,292	58.3	535,160	57.9	56,132	10.5
-보조사업	313,442	30.9	271,953	29.4	41,489	15.3
-자체사업	277,850	27.4	263,207	28.5	14,643	5.6
채무상환	36,384	3.6	33,132	3.6	3,252	9.8
예비비등	152,715	15.1	141,250	15.3	11,465	8.1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가 50.3%인 50조 9,51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제개발비가 26.4%인 26조 7,891억원, 일반행정비가 17.1%인 17조 3,08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2%인 4조 2,118억원 순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이를 2005년도와 비교하면 민방위비가 11.7%, 사회개발비가 11.5%, 경제개발비가 8.8%, 일반행정비가 8.4%,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 <표 10> 기능별 세출구조 ●

(단위: 억원, %)

구 분	2006	구성비	2005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013,522	100	923,673	100	89,849	9.7
일반행정	173,087	17.1	159,714	17.3	13,373	8.4
사회개발	509,517	50.3	457,127	49.5	52,390	11.5
경제개발	267,891	26.4	246,236	26.7	21,655	8.8
민방위	20,909	2.1	18,716	2.0	2,193	11.7
지원 및 기타경비	42,118	4.2	41,880	4.5	238	0.6

IV. 맺 음 말

민선 지방자치이후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실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지방행정 영역 중 관리업무는 축소 내지는 아예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는 대신,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한 사업추진, 고객관리 등 업무가 새롭게 창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웰빙·고령화·국제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주민의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적 정신이 지방재정관계자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업무 행태에 대한 제로 베이스적 고찰과 함께, 업무 결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재정공시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도 새로운 재정환경에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결국, 지방재정 운영 및 제도의 개선은 혁신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각종 재정혁신제도에 보다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늦어질수록 타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제도혁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예산편성지침 폐지 등과 같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온 만큼 이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치단체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때 자გი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

